

의안번호	2216105
의 퇴 인	허종식 의원
회 답 일	2026. 3. 31.
추계번호	26A0256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9조의2 (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)	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우대수요를 적용하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로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11호 전자지급수단 중 직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한 계좌 기반의 간편결제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운영할 수 있음	재량규정
2	안 제9조의3 (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설립)	-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을 설립함(제1항) -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제2호 및 제8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(제5항)	의무규정 재량규정
3	안 제9조의5(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특례)	-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디지털 결제 인프라를 한국간편결제진흥원으로 하여금 제공하게 할 수 있고,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(제1항) -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따른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의 디지털 결제 인프라를 한국간편결제진흥원으로 하여금 제공하도록 할 수 있고,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4	안 제30조(과태료)	한국간편결제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	의무규정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9조의2 (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 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 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9조의3 (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설립)	
3	안 제9조의5(온누리상 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 에 관한 특례)	
4	안 제30조(과태료)	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,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을 설립·운영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법률상 의무행위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,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- 개정안에는 재정지출의 증가와 재정수입의 증가 요인이 모두 있으며, 이를 조문 및 내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
 - **재정지출의 증가**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¹⁾을 운영하고,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며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디지털 결제 인프라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함에 따라 발생
 - － 개정안은 ①제9조의2를 신설하여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, ②제9조의3을 신설하여 현재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운영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는 한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, ③제9조의5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디지털 결제 인프라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
 - **재정수입의 증가**는 법률상 의무행위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함에 따라 발생
 - － **안 제30조제2항제1호**는 과태료 부과 사유를 추가하는 것으로,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과태료를 징수할 경우 재정수입(세외수입)이 증가할 수 있음
- 개정안에 따른 순 재정부담은 재정지출의 증가액에서 재정수입의 증가액을 차감하여 산출할 수 있으나,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운영에 추가로 투입될 예산의 규모,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사업에 필요한 비

1)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제로페이):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관이 합작해 만든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. 소비자가 매장 QR코드를 인식하여 결제하면, 소비자의 계좌에서 가맹점의 계좌로 이체가 되는 방식.

<www.zeropay.or.kr>

용의 보조 규모,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디지털 결제 인프라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규모 및 법률상 의무행위 위반에 따른 추가 과태료 부과액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어 구체적인 금액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- **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운영 및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대한 사업비 등 보조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액**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및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운영의 법제화에 따른 시스템 관리비, 인건비 등 확대 여부 등을 가정하여야 하며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대상이 되는 비용의 발생 규모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나, 개정안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및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지원 내용과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자료가 부족하므로, 현시점에서는 소요 비용을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

- 중소기업부에 따르면,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은 민간 주도로 추진된 것으로, 도입 초기(2018~2023년)에는 중소기업부에서 초기 인프라 구축을 위한 QR 보급 등의 예산 지원을 하였으나, 현재는 민간출연금 및 사업수익을 활용하여 운영 중이라고 설명

※ [참고자료] 한국간편결제진흥원 현황

- **과태료 징수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액**의 경우 개정안에 따라 금전 제재를 받게 될 의무 위반행위 건수와 과태료 부과액을 바탕으로 산출될 것이나, 현재는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정보가 부재하므로 구체적인 재정수입 증가 규모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- 이에 개정안에 따라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및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고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에 대한지원근거를 마련하는 한편, 의무행위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데 따른 추가재정소요(순 재정부담)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 제3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주계세제총괄과	장설희	김신애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설희	02-6788-4654	shjang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] 한국간편결제진흥원 현황

(자료: 중소벤처기업부)

- (법인명칭) 재단법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(설립허가일 '19.9.11)
- (소재지)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166 종이나라빌딩
- (설립목적) 제로페이 운영, 관리 및 사업전반 수행으로 핀테크산업 발전과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에 기여(정관 제2조)
- (임원) 이사 6인 (이사장, 비상근이사 5인), 감사 (비상근)
- (조직) 4실 8팀, 임·직원 33명 (이사장 포함)
- 예산 지원사항
 - 시스템 도입 초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(QR보급 등)을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위탁받아 수행('19~'23, 총 293억원)
- 제로페이 가맹점 및 결제 현황(2020~2025)

(단위 : 개, 백만원)

구분	'20	'21	'22	'23	'24	'25
가맹점	724,232	1,383,163	1,657,206	1,832,449	1,964,588	2,057,465
결제액*	1,075,994	2,437,216	1,911,684	1,304,377	1,708,952	1,526,267

* 직불, 상품권 등 모든 결제수단 포함